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(장문혁) 위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경제체육과장)	일 자	질의	2016년 12월13일
			답변	2016년 12월14일
회 의	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(1)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

질문요지



- 평창FC 운영 관련, 계약사항 자료제출 요구

답변내용

○ 평창군과 평창FC(구, 광주광산FC)의 연고이전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1. 협약체결일 : 2014.11.27.
2. 협약사항(주요내용)
 - 사업기간 : 2015.01 ~ 2019.12.(5년)
 - 사 업 비 : 200백만원(년)
 - 플레이오프, 챔피언 결정전, FA컵 진출시 연간 사업비 이외 예산범위 내에서 경기당 5백만원 지급

붙임 : 평창군 - 광주광산FC 연고이전 협약서 사본 1부.

	연고이전 협약서(MOU) (평창군-광주광산FC)	
---	---	---

제1조(목적) 평창군과 광주광산FC(이하 "광산FC"라 한다)는 연고이전협약 및 챌린저스리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협약한다.

제2조(기관 참여와 협조) '평창군'은 '광산FC'가 평창군으로 연고이전을 하고, 챌린저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경기 운영에 관한 환경적 여건을 지원하고 광산FC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의 내용을 준수한다.

1. '광산FC'는 연고이전협약서(MOU)에 따라 'HAPPY700 평창군민축구단; 평창FC(이하 "평창FC"라 한다)'로 팀명을 변경해야 한다.
2. '평창FC'는 연고이전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.

제3조(사업비 지급)

- ① 평창군은 평창FC의 사업 운영비를 협약에 따라 성실히 지급해야 하고 평창FC는 사업비를 사업비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.
 1. 사업기간 : 2015.01 - 2019.12(5년)
(단,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)
 2. 연간 사업비 : 금200,000,000원(금이억원)
- ② 플레이오프, 챔피언 결정전, FA컵 진출시 연간 사업비(2억원) 이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경기당 5,000,000원(오백만원)의 출전비를 지급한다.
- ③ 사업비(출전비) 신청, 집행, 정산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라야 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)

'평창군'과 '평창FC'는 사업계획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 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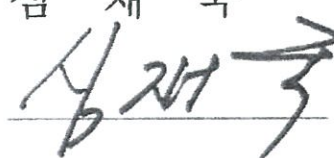
- ① 협약 유효기간 동안 팀의 명칭은 평창군에서 정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.
- ② 협약 유효기간 동안 대한축구협회 등록 대표자(구단주)는 평창군수로 하며 단장 및 구단의 인사보직 변경의 권한은 단장(장재훈)이 갖는다.
- ③ 본 사업 진행(챌린저스리그 참가) 중 유니폼 및 기타를 이용하여 후원 기관이 평창군임

을 밝혀야 하고, 그 외의 후원사는 평창군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니폼 및 A보드 등에 부착할 수 있다.

- ④ 연고지 평창이전시 선수단 전원은 평창군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.
- ⑤ 동계/하계 전지훈련 캠프는 평창군 관내로 해야 하고 기간은 연간 40일을 전후로 해야 하며 기후 및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전지훈련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. 평창군은 전지훈련에 필요한 외부 전지훈련팀의 편의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.
- ⑥ 평창FC는 동계/하계 전지훈련을 위한 외부 축구 팀 10~15팀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.
- ⑦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평창군 관내 선수 등록을 적극 협조한다. 단 등록된 선수는 모든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기량을 인정받아야 한다.
- ⑧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출신 선수 1~3명은 호남대학교 축구학과에 입학 을 추천한다. 단 대학 특기자 전형 입시 요강에 충족해야 한다.
- ⑨ 지역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유스팀 창단에 적극 협조하고, 발전 육성지원금을 일부 보조한다.
- ⑩ 어웨이 경기시 평창군 및 동계올림픽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.
- ⑪ 선수단 이동 버스(구단버스)에 평창군 올림픽 홍보물을 부착한다.
- ⑫ A-보드 및 광고 수익은 전액 평창군 수입으로 한다.
- ⑬ 평창FC 선수는 계약기간 군입대자는 상근으로 추천하여 병역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협조를 평창군에서 적극 알선한다.
- ⑭ 홈경기 시 경기 진행은 평창군(평창군축구협회)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준비해야 한다.
- ⑮ 본 협약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협약 기간에 따른다. 협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5개월 전 재협약 건에 대해 상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평창군”, “광주광산FC” 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1월 27일

평창군
군수 심재국


광주광산FC
단장 장재훈
